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동2/월전2/여의지구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주소불명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대 상 : 붙임 참조
2. 기 간 : 2024. 01. 05. ~ 2024. 01. 21.
3. 장 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4. 기타사항

가.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(☎043-740-314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01. 05.

영 동 군 수